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57

제출년월일: 2021. 5. .

제 출 자: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 정비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04조 제1항(사무의 위임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1. 4. 22. ~ 5. 4.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5) 제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2021. 5. 11.)
 - 수정의결: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에 대한 일부임용권과 기획재정국 소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개정사항만 반 영하여 의결하며, 그 밖의 내용은 전면 재검토하여 재상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무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u>위 임 사 무</u> (제5조제1항 관련)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구의회 내 전보, 휴직 및 복직 나. 구의회 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에 대한 임용권		구 의 회 사무국장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 사무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5항○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동 장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증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1.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장애진단의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나.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상태 확인	○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다. 등록증의 반환명령	○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동장
	라. 장애인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마.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자의 선정	○ 같은 법 제38조,	
	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2.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가. 기초연금 수급의 신청 접수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제외)나. 기초연금의 변경 신청 접수다.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접수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및 처리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동장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가. 농지원부의 작성·비치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49조 ○ 「농지법」 제50조	동 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	○ 같은 법 제13조, 제18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69조	
	다. 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16조, 제36조, 제37조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소독	○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마. 예방위원 위촉 등	○ 같은 법 제62조	
	2. 소독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소독업의 신고 등 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53조	
	다.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57조	
	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보건소	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가. 필수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임시예방접종	○ 같은 법 제25조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27조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같은 법 제28조	
	마.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같은 법 제29조	
	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절차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나. 시술소의 폐업·휴업신고 처리	○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제81조	
	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 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1조, 제84조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의 취소,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1조, 제84조	
	사.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아.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보건소	11.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 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시술소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 제82조	
	다. 시술소의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0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제82조	
	마. 시술소의 시설·장비 등의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2조, 제84조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 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2조, 제84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가. 개설등록 수리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 다. 보고와 검사 등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청문마. 과태료 부과 및 장수, 이의제기 처리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가. 개설 등록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 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청문 14.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면경등록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약국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 「약사법」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보건소장
	라.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 같은 법 제50조제1항	
	마.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바.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사.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아.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자. 관리자 등의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75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6.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설치 및 사용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발급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및 신고증명서발급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장 작 성·비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			
	마.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 태 지도·감독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16조			
보건소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보건소장		
	사.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및 시정명령 등,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제68조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 시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재개업·폐 업신고 수리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수리	○ 같은 규칙 제9조			
	다. 지도ㆍ점검	○ 같은 규칙 제11조			
	18.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 무				
	-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관련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약사법」제45조제1항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5조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청문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80조	
	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	20.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 사무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약사법」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라.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마. 등록 취소, 청문	○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 같은 법 제78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의료법」제38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 제3조, 제4조	
	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다. 시정 명령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7조 ○ 「의료법」제63조	
보건소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 같은 법 제50조	보건소장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상정	안)	
[별표]				[별표]			
	위임사무(제5조제1학	<u>항 관련</u>)			위임사무(제5조제1	<u>항 관련</u>)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행정관리국 (총무과)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u>○ 〈생 략〉</u>	<u>보건소장</u>		〈삭제〉		
	나. 6급이하 일반적 공무원의 구의 회내 전보·휴직 및 복직 다. 구의회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 원에 대한 임용권	○ 〈생 략〉	구의회 사무국장		 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u>구의</u> 회 내 전보, 휴직 및 복직 나. <u>구의회 소속</u>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성체과 가오\	(현행과 같음)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 〈생 략〉	<u>보건소장</u> <u>구의회</u> <u>사무국장</u>		〈삭제〉		
				기획재정국 (부동산정보과)	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 <u>사무</u>		
〈신설〉	(신설)	〈신설〉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 6조의2 제5항	<u>동장</u>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u>○ 같은 법 제6조의3</u>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안은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능률 항상을 위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의 시행에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박미진
연 락 처	02-3153-8502